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06

발의연월일: 2025. 5. 1.

발 의 자: 권칠승·박용갑·박 정

서미화 · 김태선 · 전진숙

송옥주 • 한민수 • 정준호

허성무 · 김준혁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광산근로자를 보호하고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로 하여금 낙반·붕괴의 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의 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10년간 국내 광산재해는 총 379건으로, 사망자 59명을 포함하여 353명의 재해자가 발생하는 등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 어, 광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 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산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안전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광산안전관의 수를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정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광산안전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광산안전에 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 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광산근로자의 안

전 보장 및 광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제20조 제1항·제3항 및 제26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구호조직"을 "구호조직·정보통신망·대피시설"로 한다.

2의2.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집적장(集積 場)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제9조의2제1항 중 "집적장(集積場)"을 "집적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광산 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로, "할 수"를 "하여야 하고, 광산안전의 감 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질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로 한다.

이 경우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6 호를 삭제한다.

①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제5조(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의	
의무) ①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의무) ①	
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2의2. 폐석 또는 광물찌꺼기에	
	의한 위해 방지를 위한 집적	
	장(集積場)의 설치 및 유지	
	<u>관리</u>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5. <u>구호조직</u> 의 설치, 안전장비	5. <u>구호조직·정보통신망·대피</u>	
의 확보, 광산근로자에 대한	시설	
안전교육의 실시와 안전규정		
의 제정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집적장등) ① 광업권자	제9조의2(집적장등) ①	
또는 조광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		
치를 하여야 할 폐석 또는 광		
물찌꺼기의 <u>집적장(集積場)</u> , 갱	<u>집적장</u>	
도,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		
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집적		

장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포기한 후에도 그 조치를 하여 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산업통상 저 자원부장관은 광산안전의 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및 그소속 기관에 광산안전관을 둔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광산</u> 안전의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광산안전관을 광 산에 파견하여 광산안전에 관 한 업무나 광업시설의 상황·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인에 대 한 질문이나 그 밖에 광산안전 상 필요한 조치를 하게 <u>할</u>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광산안전관) ①
이 경우 광산안전관의 수는
광산의 수에 비례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대통</u>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u>월 정기적으로</u>
हो व ः
하고, 광산안전의 감독상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검사 • 질문 등 필요한 조치를
<u>하게 할 수</u>

④ (생 략) 제26조(과태료) <신 설>

- ① (생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략)
- 6.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7. · 8. (생략)
- ③ (생략)

	(혂행과	7101
(4)	(연맹과	イデー

제26조(과태료) ①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으로 보고를 한 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 <u>③</u> -----

1.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 8. (현행과 같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